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FAQ (1차)

2024. 1.



목 차

I. 공고 및 신청 ······ 1		
01. 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의 지원자격 판단 기준은 언제인가요? 2		
02.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습니다. 이 경우, 다시 신청해서 정부지원금 지원을 받을		
수 있나요?2		
03. 공장 부지가 임대여도 수요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나요?2		
04. 법인등록번호는 동일한데, 사업장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? 2		
05. 지자체가 수요기관으로 신청하면 설립일은 무슨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?		
06. 실증 장소(설비 설치현장은 자회사이나 모회사가 수요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? 3		
07.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?3		
08. 공급기업의 신청조건인 환경기술권리의 경우 3가지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요? 3		
09. 사업 신청 시 지원분야를 중복으로 선택할수 있나요? 또한 공급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다수 기입할 수 있나요? 4		
10.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? 4		
11. 견적서를 발급한 시공업체가 나라장터 등록업체가 아닌데 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? 견적업체가 아니라도 계약		
체결이 가능한가요?		
II. 협약 체결 ······ 7		
01. 기존 소유한 통장을 사업비 통장으로 사용해도 되나요? 민간부담금을 입금할 때 얼마나 하면 되나요? 8		
02. 사업비 통장의 발급조건이 있나요?8		
03. 민간부담금 입금확인증으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?		
04. 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는 주체와 보험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8		
05. 협약 전에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, 협약서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런 경우에는		
어떻게 해야 하나요?9		



06. 원가계산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, 발급 관련 소요 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?	. 9
07. 원가계산을 검토해야하는 범위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	. 9
08. 국세 납입증명서 제출 시,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지점인데 본점의 국세 납입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?	. 9
Ⅲ. 사업수행 관리	10
01.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입금되며,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? 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	11
02. 물품을 자체제작할 경우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나요?	11
03. 정부보조금사업 시 누리장터를 이용해도 되나요?	11
04.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금 중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?	12
05. e나라도움시스템에 인건비(현물) 집행등록은 어떻게 하고, 어떤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되나요? ·····	12
06. 현물 인건비 집행을 다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?	12
07. 참여연구원 변경을 할 경우 어떤 절차가 있나요?	12
08. 월간보고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?	13
09. 사업결과보고서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각각 언제 제출하여야 하나요?	13
10. 사업 수행 후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나요?	13
11. 나라장터 가입 및 유효기간 연장요청을 위해 '국고보조금 수행확인서'나 '보조금 교부결정서' 등의 서류를 외하는데 발급받을 수 있나요?	
12. 사업종료 시 정산보고서를 컨설팅 기관 등의 외부업체에서 작성해도 되나요? 별도의 검증을 받아야 하나요?	14



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의 지원자격 판단 기준은 언제인가요?

- ➡ 지원자격의 판단기준은 공고일입니다.
- 02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습니다. 이 경우, 다시 신청해서 정부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- →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시 "동 프로그램으로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타 신청과제에 우선하여 추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"등이 고려되어 평가될 예정입니다.
- 3 공장 부지가 임대여도 수요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나요?
- 환경설비 도입을 목적으로 공급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하는 "수요기 관"은 실증 장소(설비 설치현장) 및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 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04 법인등록번호는 동일한데, 사업장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?
- → 사업장등록번호가 다르다면 사업장별로 수요기관이 되어 사업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
지자체가 수요기관으로 신청하면 설립일은 무슨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?

- ➡ 본 사업을 통해 혁신 기술·설비를 실증하려는 장소(공공하수처리시설, 소각시설 등 설치 현장)의 설립일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.
- 06

실증 장소(설비 설치현장은 자회사이나 모회사가 수요기관 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?

- ➡ 실증장소를 제공하는 기업이 자회사라면 자회사가 직접 수요기관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.
- 07

공급기업이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통해 설정한 특 허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?

- → 특허권자 등과 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인 전용실시권(또는 통상실시권)으로 본 사업 참여는 가능하나, 선정 시 "적용기술의 자체 개발 여부 및 설정등록 여부"등이 고려되어 평가될 예정입니다.
- 08

공급기업의 신청조건인 환경기술권리의 경우 3가지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요?

- ➡ 환경기술권리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3가지 중 1가지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공급기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 - 1.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
 - 2. 녹색인증기술
 - 3. 환경신기술
- → 다만, 1번의 경우 특허 출원중인 상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.

사업 신청 시 지원분야를 중복으로 선택할수 있나요? 또한 공급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다수 기입할 수 있나요?

- ➡ 지원분야는 과제당 대표분야를 하나 선택하셔야 합니다.
- ➡ 지식재산권은 동 지원사업 신청 기술(설비) 관련 환경기술권리(특허, 녹 색인증기술, 환경신기술)만 기재하셔야 합니다.

10

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?

➡ 다음의 경우에 따라 계상·산정 및 발주 해주시면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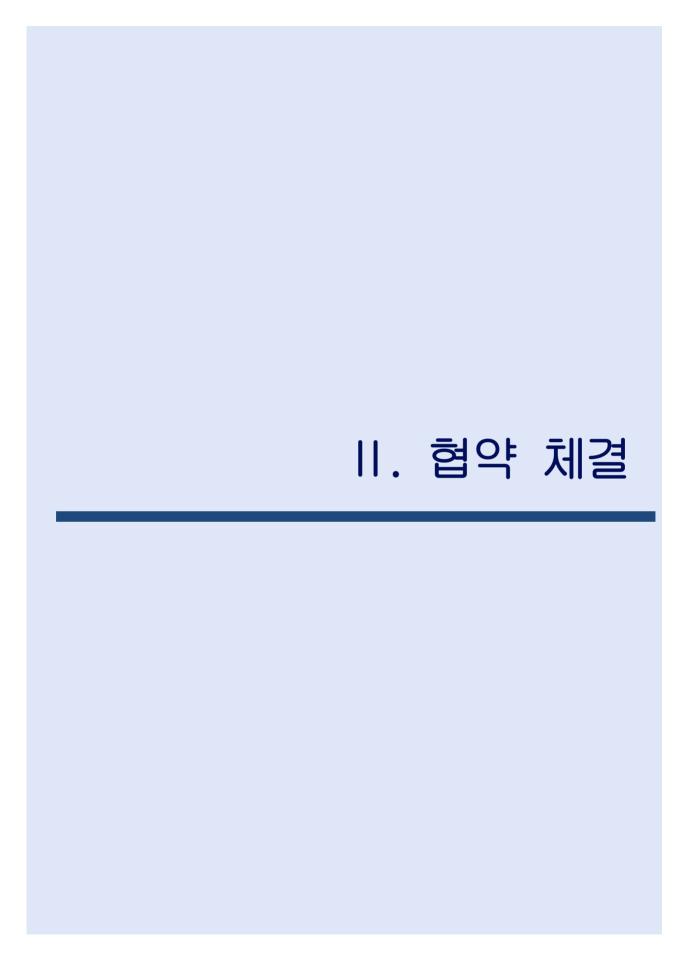
구분	유형자산	건설비
경우1	물품구매만 진행 (공급기업 자체 인력으로 설치하는 경우)	_
경우2	물품구매	설치공사 발주 (제조사가 아닌 시공사를 통해서 설치하는 경우)
경우3	_	물품 제작 및 설치공사를 시공사에서 일괄 수행하는 경우

※ 경우 2에 해당하는 경우 유형자산 및 건설비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각각 제출 (발주 시 동일한 제조사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음)



견적서를 발급한 시공업체가 나라장터 등록업체가 아닌데 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? 견적업체가 아니라도 계약 체결 이 가능한가요?

- ➡ 공급기업이 행하는 계약은 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방법을 준수하여 체결해야 하며,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계약의 경우 나 라장터 미등록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.
 -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,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계약 체결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- 1.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- 2. 헌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공사(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)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- 3. 헌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
 - 4.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 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- 위 금액에 미달하는 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아도 e나라도움 및 사업관리지침 준수 시 정상적인 집행 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3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은 조 달청장에게 계약 절차를 요청하여야 하며(중앙조달계약)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- 1.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이 공사 관련 계약
 - 2. 전문공사,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의 계약
- → 계약 체결 대상 기업의 요건은 당초 견적 여부가 아닌 사업계획 및 첨 부된 견적서(비교견적서 포함)에서 제시한 가격, 사양, 목표의 달성 가능 여부입니다.
 - 본 사업의 최종평가 시 설치된 설비의 사업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책임은 시공업체가 아닌 수행기관이 전담하므로 계약 체결 시 성능에 대한 책임을 계약조건에 명시할 것을 권장합니다.



기존 소유한 통장을 사업비 통장으로 사용해도 되나요? 민간부담금을 입금할 때 얼마나 하면 되나요?

- → 사업 참여 시에는 e나라도움 전용 통장을 신규 개설하여야 하며 민간부 담금의 70% 이상을 협약체결 전까지 해당 통장에 입금하셔야 합니다.
- ➡ 민간부담금 중 잔액은 정부지원금 잔금 지급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➡ 납부한 민간부담금의 임의 집행 및 인출은 불가합니다.

02

사업비 통장의 발급조건이 있나요?

→ 사업비 통장은 입출금에 자유롭고 금액에 제한이 없다면 시중은행 및 증권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. (카카오뱅크, 토스 제외, 증권계좌 가능)

03

민간부담금 입금확인증으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?

➡ 통장 이체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
04

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는 주체와 보험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

- ➡ 지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협약기간 및 협약 종료 후 3개월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→ 금액은 정부지원금 총액이며, 보험료는 기업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.

협약 전에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, 협약 서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➡ 원가계산서를 통해 확정된 정부지원금을 기준으로 관리지침에 있는 협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초안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06 원가계산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, 발급 관련 소요 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?
- ➡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관련 소요비용은 기업 자부담입니다.
- 07 원가계산을 검토해야하는 범위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- → 사업비 산출내역에 작성된 모든 항목들에 대한 원가계산이 필요합니다. 또한, 시설의 부품별로 물가조사를 통한 원가계산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사유가 타당하다면 비교견적서를 통한 원가 검토 또한 가능합니다.
- 08 국세 납입증명서 제출 시,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지점인데 본점의 국세 납입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?
- ➡ 지점의 국세가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. 이 경우, 본점과
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


정부지원금은 어떻게 입금되며,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?

- ➡ 본 사업은 예치형 국고보조사업으로, 협약체결 후 e나라도움에 사업 비통장계좌(보조금계좌)를 등록하시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시면 한 국재정정보원 예탁계좌에 정부지원금이 예치됩니다.
- → 이후, 사업비를 집행하실 때는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"집행등록(세금 계산서등)" 등 절차를 통해 관련 금액이 거래처로 직접 입금됩니다.

02

물품을 자체제작할 경우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나 요?

- → 다음의 금액 이상의 발주건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(나라장터)를 이용하여야 합니다
 - 1.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- 2. 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공사(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)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- 3. 헌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
 - 4.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 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
03

정부보조금사업 시 누리장터를 이용해도 되나요?

→ 나라장터와 누리장터는 동일한 시스템이 아니며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·용역·공사 계약 시에는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.

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금 중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?

- ➡ 보조사업에서 지원하는 개선비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한정되며 공급기업이 지급해야 할 대가 중 부가가치세는 공급기업의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비 계정에 합산하여 통합 지급해야 합니다.
- 05 e나라도움시스템에 인건비(현물) 집행등록은 어떻게 하고, 어떤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되나요?
- ⇒ e나라도움시스템의 '비현금성(현물) 등록'에서 매월 인건비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집행요청을 해주시면 상위보조사업자의 담당자가 승인 처리하여 사업비 집행이 인정됩니다.
- 인건비 증빙서류로는 해당 월 급여명세서, 계좌이체 증명(이체 확인 증)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.
- 06 현물 인건비 집행을 다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- → 실제 현물 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계획 현물 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 전체를 현금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.(환수금액 산정 시 참여연구원별 정산예정)
- 07 참여연구원 변경을 할 경우 어떤 절차가 있나요?
- ➡ 참여연구원 변경의 경우, 전담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변경되는 참여연구원은 업무분장과 함께 해당업무에 대한 역량(자격증, 경력기술서 등)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와함께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월간보고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?

- ➡ 월간보고서는 익월 10일까지 사업진도현황을 누적방식으로 제출해주 시면 됩니다.
- ➡ (예시) 9월 월간보고서는 10월 10일까지 제출. 10월 월간보고서는 9월 월간보고서에 내용을 포함하여 11월 10일까지 제출

09

사업결과보고서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각각 언제 제출 하여야 하나요?

- → 사업결과보고서는 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에 제출하는 사업 결과 보고서로 협약기간 종료 후 전담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목표 달성 실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⇒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e나라도움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협약 종료일 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
10

사업 수행 후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나요?

- → 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관리지침 제 32조(성과물의 귀속)에 따르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·무형적 성과물은 참여기 관의 소유입니다.
- → 단,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성과물을 양도, 대여, 담보의 제공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」제35조를 준용하여 적용해야합니다.

나라장터 가입 및 유효기간 연장요청을 위해 '국고보조금 수행확인서'나 '보조금 교부결정서' 등의 서류를 요구하는 데 발급받을 수 있나요?

- → 수행기관의 나라장터 제출을 목적으로 '국고보조금 사업수행확인서'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.
- → 공단과 수행기관의 협약체결 이후 나라장터 제출을 목적으로 요청 시 공단에서는 '국고보조금 사업수행확인서'를 발급합니다.

12

사업종료 시 정산보고서를 컨설팅 기관 등의 외부업체에 서 작성해도 되나요? 별도의 검증을 받아야 하나요?

- ➡ 정산보고서는 사업결과보고서와 함께 수행기관에서 작성 및 제출하여야하며, 컨설팅기업은 작성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.
- ⇒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산보고서 제출 시 회계법인 등 법률에서 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 증을 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정부지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추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 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.
- ➡ 정부지원금 총액이 10억원인 수행기관은 정산 시 정산보고서 검증과 함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7조의2제1항에 의하여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(회계감사보고서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